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장은혜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②

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장 은 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Examining Legislation to Streamline Regulations on Animal Cremation

연구자 : 장은혜(부연구위원)
Jang, Eun-Hye

2015. 8.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반려동물의 사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사망에서 오는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가 접목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및 장례 등을 다루는 동물장묘업이 생겨남
- 반려동물의 사육증가 및 인식변화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의 법제적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

-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2015년 7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수가 14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그 처리 건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 건수를 제외하면 사육가정에서 자연사한 상당수의 반려동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 혹은 불법적으로 암매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인 및 비사육인들의 정서,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증가는 불법적인 동물장묘업의 난립으로 이어지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조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음
-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등록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등록절차의 문제보다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과 위반시의 불이익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화장업

-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동물사체의 임의매립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요함
- 동물화장업과 관련하여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및 입법례

○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주차원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앞선 부분이 많고, 법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처리 업자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으로 규율되고 있음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 법적 개념의 정비

-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 일반적인 임의매립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
-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

○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 적절한 용도분류를 통해 해당시설이 부당하게 높은 규제로 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허술한 규제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 동물장묘업의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일 수 없으며, 생명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 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분쟁조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임
- 단순히 영업수요자의 관점에서 등록 기준 등을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동물장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 반려동물 비사육인들과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사육인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분에 대한 진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 등록된 동물의 사체를 공설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등록 대상으로 하는 외에, 임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 이외의 다른 반려동물을 등록대상으로 포섭하는 것도 고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점으로 하여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영업 및 기준, 시설 설치 시 주민 동의 내지는 설명회 개최, 재정 부담 및 사용의 문제 등 전반적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효과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환경보호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동물장묘업이 운영되도록 법제적 근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 동물 화장, 동물묘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사체처리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For those who breed pet animals, disposition of pet remains is inevitable. This, combined with the necessity to ease the emotional pain of pet owners who just lost their pet animal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s.
- The impact of increasing pet owners and changing recognition has reached to the issue of the disposition pet remains. Still, the legislative conditions in Korea fall far short of expectations.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verall problems such as an environmental and sanitary problem caused by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and ease of pet-owners' emotional pain through a humane treatment of pet remains through the promotion of lawful pet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s.

II . Main Contents

- Legal issues on pet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s
 - Status of legislation 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in Korea

- As of July 2015, there are only 14 pet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 providers registered on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is means that not many pet remains are properly disposed in Korea. According to the Wastes Control Acts, relevant entities like veterinary clinics pet remains as medical refuse but it is assumed that many pet owners treat their pet animals dying of natural causes as household wastes, putting them into a standard plastic garbage bag, or bury them illegally.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way of treating pet remains and begin discussions on practical methods of their disposition considering the sentiment of people - whether they breed pet animals or not - and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 Necessity of rules on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 Growing demand for pet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s has resulted in a spring-up of unlicensed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 providers. Yet, they are only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under the current laws.
 - Some argue that a complicated registration procedure impedes the promotion of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But there are more significant factors playing here: absence of specific matter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and undefined disadvantages or penalties for a viol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 Pet cemetery and cremation business
- Full prohibition of arbitrary burial with no exceptions needs to be reconsidered since such prohibition may weaken the regulatory power.

- In regard to pet cremation busines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y difference between the cremation of human bodies and pet animals'. This is because such differences may need to be specified by the law.

Case studies: Disposition of pet remains and related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 U.S

- Matter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are specified in State laws. Some states have highly sophisticated level of legislation with detailed provisions.

○ Japan

-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regulatory approaches on those who operate pet disposal business. With no legislation available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each local governments regulates pet disposal service providers by applying their own ordinances, codes, guides, guidelines.

Measures to rationalize regulations on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 Redefine legal concepts

- Legal concepts need to be modified to endure the establishment of more comprehensive concepts rather than enumerating a list of animals included in a certain group to be covered by pet funeral and cremation services.

- It is necessary to make provisions for matters related to pet remains, separating them from wastes defined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preventing dualistic regulation of pet disposal.
- Allow natural burial and exceptions
 - While banning on arbitrary burial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create special provisions that make exceptions wher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 Matters related to the method of natural burial need to be prescribed in provisions on the ways of pet remains disposal.
- Classify the use of pet cemetery and pet crematorium by the Building Act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use of pet cemetery and pet crematorium to prevent over-regulation from restricting facility installation and poor regulation from causing damage to member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 Reform the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pet cemetery and pet crematorium
 - The issue of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cannot be simply confined to the matter related to regulating the relation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lients. Rather, it is a comprehensive issue that requires considerations of social and moral aspects based on the respect for life, stricter environmental standards and settlements of disputes over unwanted public facilities.

-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need of discussions and consensus considering every possible problem, instead of suggesting the promotion of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through deregulation and relax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favor of service providers.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which focuses on the measures to rationalize regulations on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will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pe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that successfully deals with the main issues: protection of animals, emotional stability of pet owner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Key Words :** *Animal Protection Act*, funeral and cremation business, pet cremation, pet cemetery, pet animals, disposition of pe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 2 장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21
제 1 절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21
제 2 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23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23
2.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28
제 3 절 반려동물 관련 개념	35
제 4 절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자연장, 화장업	37
제 5 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38
제 6 절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규율체계	39
제 7 절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문제	39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	43
제 1 절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43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43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45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64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64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69
제 4 장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89
제 1 절 법적 개념의 정비	89
1.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	89
2. 반려동물 사체의 별도취급 여부	90
3. 동물화장(火葬)의 분류	91
제 2 절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92
제 3 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94
제 4 절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98
제 5 절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적 논의	99
제 5 장 결 론	103
참 고 문 헌	1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일전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¹⁾, 이러한 인식확대에 따라 관련 용품 및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성장·고급화 추세에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반려동물의 사망에서 오는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가 접목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및 장례 등을 다루는 동물장묘업이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문화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890년대에 뉴욕의 하츠데일 애완동물 묘지가 생겨난 이래로, 상당수의 애완동물 전용묘지가 생겨나고 있고²⁾, 프랑스에서도 애완동물 별도의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³⁾ 중국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 중에 있고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가 애완동물 장례업을 미래의 유망직업으로 소개한 것이 기사화 되기도 했다.⁵⁾

1)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伴侶動物)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 네이버 두산백과. 검색일 2015. 4. 17. 금.

2) “美서 애완동물 묘지 첫 국립사적 지정, 『연합뉴스』 2012. 9. 30.자. - 검색일 2015. 4. 20. 월.

3) “애완견의 출생·사망 철저히 관리 - 사회적 분위기·제도 등 잘 마련돼 있어”,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원, 2003. 3, 22면.

4) “KOTRA, 中반려동물 장례업 시장동향 발표- 반려동물 전용묘지 인기…중국 반려동물 장례산업 주목해야”, 『한국상장례 NEWS』, 2014. 8. 19자. <http://www.dailyvet.co.kr/news/industry/30011> - 검색일 2015. 4. 20. 월.

5) “애완동물 장례업·문학치료사…미래에 뜰 유망 직업알려드려요”, chosun.com 2014.

이렇듯 반려동물의 사육증가 및 인식변화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의 법제적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반려동물 사체의 ‘폐기물’ 취급이다. 현행 법상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물사체의 임의투기, 임의매립, 임의소각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육자들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정서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적당한 장소에 불법으로 매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행위는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이어져 환경오염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려동물 사체의 폐기물 처리 자체도 일반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⁶⁾ 이에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 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⁷⁾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14개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성장·고급화 추세는 동물장묘시설 수요의 증가로도 이어지게 될 것인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와 달리, 동물장묘시설의 기피시설 인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⁸⁾⁹⁾ 화장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에

1. 7자 / 러시아 애완동물장례센터 유망사업으로 떠올라 - <http://platum.kr/archives/4399> - 검색일 2015. 4. 20. 월.

6)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 개선돼야 - 살아서는 가족, 죽어서는 폐기물로 취급”, 『한국상장례 NEWS』, 2014. 9. 2자. - 검색일 2015. 4. 20. 월.

7) 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 - 검색일 2015. 7. 16. 목.

8) “금산 추모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안돼”, 『금강일보』, 2015. 4. 20.자, - 검색일 2015. 4. 20. 월.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99>

9) “협오시설 NO”...용인 ‘반려동물 복지장묘시설’ 건립 난항, 『뉴시스 경기남부』, 2015. 3. 20자. - 검색일 2015. 8. 6. 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0_0013549390&cID=10803&pID=10800

따른 환경단체의 반대, 등록절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동물장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¹⁰⁾ 그러나 수요증가에 수반하여 합법적인 장묘시설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영업¹¹⁾이 성행하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환경적·위생적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¹²⁾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법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동물장묘업’이 법으로 처음 규정된 것은 2007년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다.¹³⁾ 그 이전까지 동물장묘업은 일반인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관련 영업을 개시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동물장묘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쟁점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제에 따른 문제 및 동물사체처리 관련 문제,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법 및 기타 법령과의 관계, 동물 화장장 및 건조장 설치와 관련한 환경 문제 및 기타 법령과의 관계,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10) “세종시 부강면 ‘동물장묘업’ 시설 논란”, 「충청투데이」 2015. 1. 5자. - 검색일 2015. 4. 21. 화.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6837&sc_code=1412156239&page=21&total=5996

11) “납골당 유행 편승…반려동물 불법 화장터 ‘우후죽순’ ”, MBC 뉴스투데이, 2014. 10. 14. - 검색일 2015. 8. 6. 목.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36237_13495.html

12) “동물장묘업 성행…불법이 판친다 - 사체 처리 폐기물 아닌 동물복지 및 환경보호 차원서 현실적 규정 절실해”, 「개원」 2014. 10. 23자. - 검색일 2015. 4. 21. 화.

13) 법률 제8282호, 2007.1.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동물장묘업이 활성화되어 관련 제도들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와 같이 최근에 동물장묘업이 도입되어 발전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및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동물복지 및 환경보호, 동물사체 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의 조화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기존 문헌 및 보도자료의 조사·분석,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및 법제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자문을 진행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2 장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제 1 절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실태보고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약 18%에 이르고 있는데¹⁴⁾, 이러한 반려동물 사육인구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사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관련 용품 및 서비스가 고급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갖추고 묘지를 조성하는 등 ‘반려’의 연장선상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성장추세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 7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¹⁵⁾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14개에 불과하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는 불법적인 동물장묘업의 난립으로 이어지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조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다.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등록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등록절차의 문제보다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과 위반시의 불이익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요약”- 검색일 2015. 7. 16(화).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type=6_18_1bdsm&id=32422

15) 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 - 검색일 2015. 7. 16. 목.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의 「가즈카베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목적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반려동물 묘지 등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며, 화장시설 등의 경우 대기오염, 악취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¹⁶⁾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간략한 시설기준 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에 대한 제재, 반려동물 사체처리를 위탁한 사육인(고객)에 대한 책임 등 동물장묘업자의 의무 관련사항도 전무하며, 주민기피시설의 인식경향과 달리, 이에 대한 절차적 보장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일본의 동물사체 처리업과 관련한 조례 등의 제정 상황을 정리한 환경성 자료를 살펴보면,¹⁷⁾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 중 하나로 주변주민의 동의 내지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시장의 허가시 환경적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는 반려동물 사육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물사체의 폐기와는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체처리’라는 부분의 환경적·사회적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완화라는 기

16)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 검색일 2015. 7. 16(화).

http://www.kasukabe-shigikai.jp/voices/GikaiDoc/attach/Gk/Gk796_88.pdf

17) <https://www.env.go.jp/council/14animal/y143-08/mat01.pdf> (검색일: 2015년 7월 24일, 금).

조로 일관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영업 등록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려동물 사육인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보호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규율은 환경적 규제 및 영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규율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동물사체

반려동물의 사육 증가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증가로까지 이어진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 등록동물의 말소절차를 위해서는 사체처리에 대한 증빙¹⁸⁾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사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발생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부분¹⁹⁾, 동물 관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 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19)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의 하나로 동물사체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²⁰⁾을 들고 있는 부분이 전부이다.

동물사체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²¹⁾고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²²⁾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²³⁾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사체와 관련한 규정을 정리하면, 반려동물이 일반가정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즉,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야 한다.

(2) 폐기물처리에 따른 금지사항의 적용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사육인들이 직접

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0)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2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

2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사체를 처리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합법적’인 처리가 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금지사항들은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금지사항은 크게 폐기물 투기 금지, 임의매립 금지, 임의 소각 금지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외의 법률에서 동물의 사체와 관련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기 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조 문	금지의 내용	위반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8①, §68③ 1호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① 2호, §78, 3호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5, 1호, §62,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서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법」 §22, 1호, §97, 3호	정당한 사유없이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기 금지와 관련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반려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행위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반려동물을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 곳이나 투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려동물 사육인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²⁴⁾ 임의 투기의 가능성이 낮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한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임의 매립행위이다. 또한, 위법성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육하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정서적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매립은 투기행위보다 상당수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생각된다.

임의매립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 문	내 용	위반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8②, §68③ 1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적당한 장소를 찾아 땅에 묻어주는 행위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반려동물 사육인들이 직접 자신의 죽은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것인데, 이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임의 소각이 금지되는 만큼,

24) “가족이라더니…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광남일보』, 2015. 8. 17(월)자. - 검색일: 2015. 8. 18(화).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9809163216986023>

등록하지 않고 동물화장을 진행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의 영업 역시 불법적인 행위이다.²⁵⁾

조 문	내 용	위반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8②, §68③ 1호, §14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다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지역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현행 반려동물 사체처리방식의 개선 필요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근 야산이나 공원에 자신의 죽은 반려동물을 묻어주는 것이 금지된 행위라면, 반려동물 사육인들은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자를 찾아가서 사체처리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5년 7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수가 14개²⁶⁾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그 처리 건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육가정에서 자연사한 상당수

25)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불법 화장’까지 등장”, SBS 뉴스 2013. 7. 11자. - 검색일 2015. 4. 21. 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79148&plink=OLDURL

26) 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 - 검색일 2015. 7. 16. 목.

의 반려동물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²⁷⁾되고 있다. 더구나 동물장묘업이 2007년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어 합법화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만큼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는 “사육가정 내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반려동물 사체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암매장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²⁸⁾된다.²⁹⁾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인 및 비사육인들의 정서,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2.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1) 동물장묘업의 대상

현행 우리법제에서 동물장묘업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한정된다.³⁰⁾ 이들 동물은, 동물과 관련한 영업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의 대상이 되며, 우리 법에서는 이를 열거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관련 영업과는 별개로 등록대상 동물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동물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7)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4. 7, 551면.

28) 국회입법조사처, 앞과 동일.

29) “애완견, 죽으면 쓰레기...반려동물 사체 생활쓰레기 분류”, 「매일신문」, 2010. 1. 13.자. 검색일: 2015. 7. 16. 목.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52&yy=2010

30)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을 말하는데, 고양이 사육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추어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³¹⁾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 한정된다.³²⁾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³³⁾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³⁴⁾

(2) 동물장묘업의 범위 · 시설기준

1) 영업의 세부범위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은 세부적으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분류된다.³⁵⁾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장례식장

동물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³⁶⁾

② 동물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

31) “고양이는 왜 반려동물 등록이 안되나요”, 동아닷컴 2014. 11. 18자 - 검색일: 2015. 4. 30.

<http://news.donga.com/3/all/20141118/67969115/1>

32)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33)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34)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35)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3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9

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하며,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³⁷⁾

③ 동물건조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멸균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도 첨부해야 한다.³⁸⁾ 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 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외에,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³⁹⁾ 또한 건조장 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⁴⁰⁾

④ 동물전용 납골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3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9

3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3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9

4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9

2)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경합문제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위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⁴¹⁾ 또한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 예정중인 법률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3) 동물장묘업의 등록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⁴³⁾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고, 등록신청

41) 안건번호12-0655,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42)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예정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9호

4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제 2 장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이 등록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는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⁴⁴⁾ 이 경우 등록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⁴⁵⁾

구 분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납골시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폐기물관리법」 §29②) ② 소각시설 설치검사 결과서(「폐기물관리법」 §30) ③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폐기물관리법」 §29②) ② 멸균분쇄시설 설치 검사결과서(「폐기물관리법」 §30) ③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	
공통 서류	① 인력현황 ②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③ 사업계획서		

2) 영업의 변경신고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이후,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⁴⁶⁾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⁴⁷⁾에 등록증과 영업시설의 변경

4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항

4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항

46)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4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폐기물관리법」 §29②),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폐기물관리법」 §30),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⁴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⁴⁹⁾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⁵⁰⁾

3)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인적 제한 및 시설제한

영업등록의 인적 기준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물장묘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동물장묘업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⁵¹⁾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⁵²⁾에 맞지 않는 경우도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4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5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51)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5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9

② 지역적 제한

동물장묘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동물장묘업의 경우 다른 동물관련 영업과 비교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녹지지역⁵³⁾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⁵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도, 동 법령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⁵⁵⁾

상수원보호구역⁵⁶⁾에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⁵⁷⁾

문화재보호구역⁵⁸⁾에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⁵⁹⁾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4호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5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

56) 「수도법」 제7조제1항

57)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중증·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설치·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가족 및 중증·문중의 봉안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하는 불가하다고 볼 것이다.

58) 「문화재보호법」 제27조

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⁶⁰⁾과 특별대책지역⁶¹⁾, 접도구역⁶²⁾, 하천구역⁶³⁾, 농업진흥지역⁶⁴⁾, 산림보호구역⁶⁵⁾ 및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⁶⁶⁾, 요존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조성 가능)⁶⁷⁾, 백두대간보호지역⁶⁸⁾, 사방지⁶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⁷⁰⁾과 군사보호구역⁷¹⁾,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⁷²⁾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 3 절 반려동물 관련 개념

우리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伴侶動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동물보호법」에서 영업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⁷³⁾ 외국의 경우도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예는 많지 않지만, 규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물묘지규정에서는 반려동물

6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62) 「도로법」 제40조

63) 「하천법」 제10조

64) 「농지법」 제28조

65) 「산림보호법」 제7조

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

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6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69) 「사방사업법」 제4조

7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71)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

73)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을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또는 인간의 취미 목적으로 적응하고 길들여진 개, 고양이, 조류, 토끼, 햄스터를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⁷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반려동물 화장법」에서는 숨진 당시 반려인(주인)과 “반려 또는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⁵⁾ 뉴욕의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에서는 반려동물(Pet)을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적응하고 길들여진 개, 고양이, 설치류, 어류, 조류, 뱀, 거북이, 도마뱀, 개구리, 토끼 등 모든 애완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법의 규율 목적에 따라 규율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이란 이것이다.’라는 식의 정의 조항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입법례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이를 법으로 규율하고자 할 때에 규범력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 즉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축산법」 상의 “가축”인 소, 말, 닭 등도 반려동물로 사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상 영업의 대상인 동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영업에 있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 우리법상 동물장묘업은 동물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

74) Primary Citation: VA Code Ann. §§ 57-39.20 - 57-39.25. Country of Origin: United States. Last Checked: October, 2014. Alternate Citation: VA ST §§ 57-39.20. Definitions.

75)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76)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750-a. (Definitions)

용 납골시설로 분류되는데, 예컨대 애완용 닭이나 도마뱀, 혹은 고슴도치 등을 사육하는 사람이 해당 동물이 죽어서 장례를 치루거나 화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물장묘업자가 규정대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엄밀하게는 이에 대한 규율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제 4 절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자연장, 화장업

우리의 현행 법제에서는 동물 사체의 매장 혹은 자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자연장과 관련해서는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나, 동물사체의 매장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 매립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⁷⁷⁾ 2015년 1월 20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⁷⁸⁾에 따라, 2016년 1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⁷⁸⁾, 동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영업에는 동물사체의 매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물사체의 임의매립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7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68조 제3항 제1호. 임의 매립금지조항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78)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⁷⁹⁾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화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통해 유추하면 동물화장은 ‘동물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화장업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별도의 개념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화장업의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동물화장의 경우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지금까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반려동물사체를 취급하는 동물장묘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⁸⁰⁾에 해당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에서 동물장묘업자가 처리하는 동물사체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건축법」상의 용도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규제 및 그에 따른 법적 문제들이 상이해지므로 법개정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80) 「건축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 6 절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규율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관련 영업의 일종으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와 관련한 시설 기준 및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 일리노이 주, 뉴욕주 등의 경우는 별도의 반려동물 화장 내지 장례 관련 법률을 운영하고 관련 영업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⁸¹⁾ 일본의 경우도 반려동물 사체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으로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⁸²⁾

동물장묘시설의 규율체계를 중앙정부의 법령을 통해 정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사무로 처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 중에서 특정하여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시설 및 일부의 등록기준만 있을 뿐이므로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 7 절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문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⁸³⁾된 바 있었으나,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중복 및

81) 제2장 동물장묘업의 입법례 및 국내외 현황, 제2절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부분 참고.

82) 제2장 동물장묘업의 입법례 및 국내외 현황, 제3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부분 참고.

83) 의안번호 100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⁸⁴⁾는 점이 지적되면서 무마되었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전용 공설장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등록대상동물에 한하여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반려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실시하였는데,⁸⁵⁾ 검토보고서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⁸⁶⁾

해당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의 동물 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⁸⁷⁾에 이어 다음과 같이 제15조의2(공설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와 제15조의3(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었다.⁸⁸⁾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설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이하 “공설장묘시설”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4) “동물보호법 전부(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2011. 4, 33면.

85) 의안번호 100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2면.

86) “동물보호법 전부(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2011. 4, 32면.

87)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5조

88) 의안번호 100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3면.

제15조의3(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당시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는 5개에 불과하나 미등록업체가 10여개(일부는 프랜차이즈화)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동물장묘수요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⁸⁹⁾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반려동물 사육인구 및 그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14개도 많다고 할 수 없고, 미등록업체의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미등록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기득권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최근의 ‘경기도민 반려동물 관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처리방법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⁹⁰⁾ 2010년의 개정 「동물보호법」이 발의된 당시보다 더욱 변화된 반려동물 사육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공설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동의를 비롯하여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89) “동물보호법 전부(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2011. 4, 33면.
 90) 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진단」 제188호, 경기연구원, 2015. 6. 10, 16면.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제 1 절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미국의 경우 동물과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동물복지법」⁹¹⁾과 동물복지의 구현을 위한 실행을 규정한 「동물복지규정」⁹²⁾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동물복지법」은 7U.S.C. §§2131-2159(2008)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간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동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동물복지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⁹³⁾ 「동물복지법」은 1966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험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훔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하자 이를 위하여 「실험실 동물복지법」⁹⁴⁾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⁹⁵⁾ 그 후, 의회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1970, 1976, 1985, 1990, 2002) 개정을 하였는데, 동물실험에 관한 3R 원칙을 규정한 1985년 개정을 중요한 개정으로 보고 있다.⁹⁶⁾ 1985년 개정에서는 i) 동물윤리에 있어서 3R 원칙에 관한 중요성의 새로운 발견을 강조, ii) 「동물복지법」에 refinement, replacement, reduction을 몇몇 조항에 규정⁹⁷⁾, iii) 3R원

91) 「Federal Animal Welfare Act」

92) 「Federal Animal Welfare Regulation」

93) 박수현, “미국의 동물장묘법 개관”, 「동물장묘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워크숍 자료집, 2015. 6. 11. 55면.

94) 「Laboratory Animal Welfare Act」

95) 박수현, 앞과 동일.

96) 박수현, 앞과 동일.

97)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도 3R 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관위원회⁹⁸⁾를 설치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 iv) 해당 기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⁹⁹⁾

그러나 「동물복지법」과 「동물복지규정」에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¹⁰⁰⁾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연방차원에서 보다는, 주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면, 일리노이 주의 「반려동물 화장법」¹⁰¹⁾, 뉴욕주의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¹⁰²⁾,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 및 안전법」 제6장의 “동물화장” 규정¹⁰³⁾, 버지니아주의 「웨스트퍼블리싱 주해 버지니아 법규집」 제57관 종교적이고 관용적인 문제들, 제3장 묘지, 제8절 동물 묘지관련 규정¹⁰⁴⁾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8)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99) 박수현, 앞의 글, 56면.

100) 박수현, 앞의 글, 55면.

101) BUSINESS TRANSACTIONS, (815 ILCS 318/)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102) 뉴욕주 New York State,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허가서비스과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일반사업법 (General Business Law)」 제35-C

103)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CA Codes (hsc: 9700-9703).

104) 「West's Annotated Code of Virginia」. Title 57. Religious and Charitable Matters; Cemeteries. Chapter 3. Cemeteries. Article 8. Pet Cemeteries..VA ST §§ 57-39.20 ~ 57-39.25.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1)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주는 「웨스트퍼블리싱 주해 버지니아 법규집」 제57관 종교적이고 관용적인 문제들, 제3장 묘지, 제8절 동물 묘지규정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⁵⁾

- § 57-39.20 . 정의
- § 57-39.21 . 토지전용 신청 의무(Duty to file declaration of land use restriction)
- § 57-39.22 . 불법 표현행위: 영구관리기금 설치 의무(Certain representations unlawful; perpetual care trust fund required)
- § 57-39.23 . 매장권 소유자의 주소변경 공지의무
- § 57-39.24 . 토지 전용 취소(Removal of restriction on land)
- § 57-39.25 . 경범죄 위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 의

먼저, 정의 조항에서는 “매장권”, “매장”, “운영자”, “영구관리기금”, “반려동물”, “반려동물묘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반려동물”을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또는 인간의 취미 목적으로 적응하고 길들여진 개, 고양이, 조류, 토끼, 햄스터를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¹⁰⁶⁾ “반려동물묘지”

105) Primary Citation: VA Code Ann. §§ 57-39.20 - 57-39.25. Country of Origin: United States. Last Checked: October, 2014. Alternate Citation: VA ST §§ 57-39.20 ~ 57-39.25. <https://www.animallaw.info/statute/va-cemeteries-pet-article-8-pet-cemeteries> 이하 법령의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인용하여 해당 조문 및 항을 명시하였다.

106) § 57-39.20. Definitions. As used in this article, unless the context requires a dif-

란 “반려동물 사체의 지상 또는 지하 매장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예약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토지와 그에 부속된 구조물, 시설 또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¹⁰⁷⁾ 이때 쓰레기 매립지 또는 반려동물의 집단매장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반려동물 묘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령에서는 “매장(Interment)”을 토장, 분묘매장 또는 안치소 매장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분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¹⁰⁸⁾ 또는 동법령에서 “운영자(Operator)”란 매장권(burial or interment right)의 판매와 청약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반려동물 묘지, 개별 매장권의 영구관리 사실을 공적으로 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¹⁰⁹⁾

② 영구관리기금

버지니아 주법에서는 반려동물묘지와 관련하여 “영구관리기금”(Perpetual care fund)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1996년 7월 1일 법령 시행 이후, 4개 주(켄터키,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내에서 반려동물 묘지 매장권의 판매 또는 청약하는 행위 및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반려동물 묘지, 묘지 내 매장권이 보장

ferent meaning: “Pet” means an animal that has been adapted or tamed to live in intimate association with or for the pleasure of people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dogs, cats, birds, rabbits, and hamsters.

107) § 57-39.20. Definitions. “Pet cemetery” means land, together with any structures, facilities, or buildings appurtenant thereto provided to members of the public for use or reservation for use for the individual interment, above or below ground, of pet remains. “Pet cemetery” does not include land used exclusively for landfilling or the communal burial of pets, but does include an area where a portion of the land is used for the communal burial of pets.

108) § 57-39.20. Definitions. “Interment” means the disposition of pet remains by earth burial, entombment in a mausoleum, or inurnment in a columbarium.

109) § 57-39.20. Definitions. “Operator” means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offering for sale any burial or interment right in a pet cemetery and representing to the public that such cemetery, single burial or interment right therein will be perpetually cared for.

(care for)될 것이라는 설명, 표현, 또는 이를 암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반려동물 묘지 및 그 묘지 내 매장권의 영구관리 관련 조항이 제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¹¹⁰⁾

영구관리기금은 반려동물 묘지의 관리, 유지보수, 운영 및 미화작업을 위한 반려동물 묘지 수익에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¹¹¹⁾ 반려동물묘지 운영자는 구역, 필지, 매장권의 최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4개 주(켄터키, 캐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은행, 저축대출은행 또는 연방 보증 투자 금융기관에 최소 \$12,000이 예치된 취소불능 신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신탁계좌가 영구관리기금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¹¹²⁾ 영구관리기금의 수익은 반려동물 묘지의 부지, 구역, 비석, 기념물, 건물, 장비, 조각상,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의 유지 관리, 감리, 개보수, 보존과 부동산세 납부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¹¹³⁾ 반려동물 묘지 운영자는 모든 자산과 영구관리기금의 투자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110) § 57-39.22. Certain representations unlawful; perpetual care trust fund required. A. Effective July 1, 1996, it shall be unlawful to sell or offer for sale in the Commonwealth any burial right in a pet cemetery, and in connection therewith to represent to the public, in any manner, express or implied, that the entire pet cemetery or any burial or interment right therein will be perpetually cared for, unless adequate provision has been made for the perpetual care of the cemetery and all burials and interment rights therein as to which such representation has been made.

111) § 57-39.20. Definitions. “Perpetual care fund” means a fund created to provide income to a pet cemetery to provide care, maintenance, administration and embellishment of the pet cemetery.

112) § 57-39.22. Certain representations unlawful; perpetual care trust fund required. B. Each pet cemetery operator shall establish in a bank, savings and loan or other federally insured investment banking institution doing business in the Commonwealth an irrevocable trust fund in the amount of at least \$12,000 before the first lot, parcel of land, burial or interment right is sold. This fund shall be designated the perpetual care fund.

113) § 57-39.22. D. The income from the perpetual care fund shall be used only for the maintenance, supervision,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grounds, lots, markers, memorials, buildings, equipment, statuary, and other real and personal property of the pet cemetery and for the payment of real property taxes.

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언제든지 반려동물 묘지 내 매장권 소유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세무관리의 감사를 받는다.¹¹⁴⁾ 영구관리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3급 경범죄로 간주하고, 그 위반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¹¹⁵⁾

③ 토지전용

반려동물 묘지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순회법원 사무국장에게 반려동물 묘지 토지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¹⁶⁾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양도 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토지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¹¹⁷⁾ 사무국장(기록관)은 기록대장(deed book)에 신청서를 기록하고 해당 소유주의 이름을 색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된 토지전용 신청서상에 성립된 토지이용 지정은 § 57-39.24¹¹⁸⁾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 57-39.24에 따른 취소를 제외하고는 본 법령(Section)dp 따라 용도가 제한된 토지를 반려동물 묘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¹¹⁹⁾

114) § 57-39.22. D. Annual reports of all the assets and investments of the perpetual care fund shall be prepared and maintained by the operator, and sha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at reasonable times to any owner of a burial right in the pet cemetery. Such records shall be subject to examination by the commissioner of revenue.

115) § 57-39.25. Violation a misdemeanor.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 57-39.22 of this article. Any such violation shall be deemed a Class 3 misdemeanor, and any person convicted of such violati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 18.2-11.

116) § 57-39.21. Duty to file declaration of land use restriction.

117) § 57-39.21. Duty to file declaration of land use restriction

118) § 57-39.24. 토지 전용 취소(Removal of restriction on land) A. 제 § 57-39.21에 따른 토지전용 신청서 제출 후, 그 전용사항은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해당 반려동물 묘지의 소재지 순회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본 법령(section)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119) § 57-39.21. The restriction established in such a recorded declaration may be removed

(2)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주는 「2007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제6장(Part 6) “동물 화장”, section 9700-9703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²⁰⁾

① 토지전용

이 법에 따라 부동산(property) 소유자는 1985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사무국장 또는 기록관이 기록한 공증서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반려동물 묘지로 전용할 수 있다.¹²¹⁾ 토지전용신청서(dedication document)에는 해당 토지의 전용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전용된 토지는 온전히 반려동물 묘지의 용도로만 보유, 사용되어야 한다.¹²²⁾ 유치권의 발생이나 설정 당시 반려동물 묘지로 이미 전용된 토지 또는 이후 반려동물 묘지로 전용될 토지에 대하여 계약, 설정, 발생된 모든 담보대출(mortgage), 신탁증서 및 기타 유치권 소유자의 동의를 있어도 반려동물 묘지 전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용을 무효화(defeat)할 수 없다.¹²³⁾ 그러나 담보대출, 신탁증서나 기타 유치권은 그 토지의 전용과 종속관계에 있으며, 저당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반려동물 묘지 전용과 종속관계에 있다.¹²⁴⁾ 토지에 대한 전용취소는 반려동물묘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 공청회 통지 또는 법원이 만족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대법원의 명령

only as provided in § 57-39.24. Unless a restriction is so removed, no person shall use land restricted pursuant to this sec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as a pet cemetery.

120) <http://law.justia.com/codes/california/2007/hsc/9700-9703.html>. 이하 해당 사이트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을 명시하였다.

121)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0.

122)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0.

123)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1.

124)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1.

및 결정에 의해 토지 전체 또는 일부의 전용이 취소될 수 있다.¹²⁵⁾

② 유지·관리

토지전용이 동 법령 제9700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 이후 해당 반려동물 묘지에 매장될 반려동물의 반려인에게 매장비용에 더하여 유지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¹²⁶⁾ 유지관리비는 실제 매장에 한하여 청구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25 이상이어야 한다.¹²⁷⁾ 유지관리비 수익금은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에 의해 묘지관리기금 또는 유사 신탁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전액 반려동물 묘지의 영구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¹²⁸⁾

한편,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 묘지에 7일 이상 방치된 반려동물 사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 묘지에 7일 이상 방치된 반려동물 사체는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띄도록 반려동물 묘지에 게시하여야 한다.¹²⁹⁾

(3) 일리노이주

① 환경보호법과 반려동물 화장법

일리노이주에서는 「2003년 개정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이 일리노이주에서의 동물화장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은 특정 유형의 동물화장장이 특정 유형의 동물화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

125)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0.

126)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2.

127)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2.

128)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2.

129) 2007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Sec. 9703.

아도 되도록 허용하였다.¹³⁰⁾ 개정 전 동법은 동물사체의 획득 경로를 불문하고 이를 화장하는 동물화장장이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허가(waste management permit)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화장시설은 환경보호청의 검사 및 감시대상이 되었는데, 환경보호청은 반려동물이든 그밖의 동물이든 구분없이 죽은 동물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였다.¹³¹⁾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화장법」(Companion Animal Act)은 죽은 반려동물만을 화장할 경우에는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화장법」에 정의된 반려동물만을 화장하는 동물화장장은 환경보호청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¹³²⁾ 이에 대해 IAPC (Illinois Association of Pet Crematories) 회장은, 「반려동물화장법」은 “죽은 동물에 존재하는 해로운 오염물질로부터 일리노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청 토지 규제를 피해가도록 소수의 반려동물 화장장에게 이득을 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¹³³⁾

② 반려동물화장업

일리노이주의 「반려동물화장법」¹³⁴⁾상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반려동물이 숨진 당시의 반려인(owner-주인)과 반려 또는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숨진 동물을 뜻한다.¹³⁵⁾ 동법에서는 “반려동물장례 서비스 제공자”, “반려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탁자 또는 연계자”에 대해 규정하고, 숨진 반려동물의 화장 후 남은 잔해를 “화장 후 유골

130) 박수현, 앞의 글, 57면.

131) 박수현, 앞과 동일.

132) 박수현, 앞과 동일.

133) 박수현, 앞의 글, 58면.

134)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ilcs3.asp?ActID=2328&ChapterID=67> 이하 해당사이트에서 인용한 법령원문 및 해당 인용 항을 명시하였다.

135)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Companion animal” or “animal” means a deceased animal that had a companion or pet relationship with an owner at the time of the animal's death.

(cremation remains)”이라 하고 있다. 또한 화장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별구분화장”, “공동화장”, “다른 동물의 화장 후 유골의 섞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데, “개별구분화장”이란 i) 소각로에서 한 번에 단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하거나, ii) 동시에 여러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과정을 말하지만 각각의 반려동물은 공간을 구분해 다른(숨진) 반려동물과 완전히 분리하여 화장하는 것을 뜻한다.¹³⁶⁾ 따라서 이 경우 화장과장에서 서로 다른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이 섞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¹³⁷⁾ “공동화장”이란 화장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효과적인 공간 구별이나 분리 없이 동시에 화장하는 것을 말하며, 화장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이 섞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¹³⁸⁾ “다른 동물의 화장 후 유골의 섞임”은 화장 후 남은 유골이 특정 반려동물의 것임을 알 수 없거나 또는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의 총량 중 1% 이상이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이 섞이는 것을 말한다.¹³⁹⁾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의 경우

136) “Individually partitioned cremation” means a cremation process in which either (i) only one companion animal at a time is cremated in the incinerator or (ii) more than one companion animal is cremated in the incinerator at the same time, but each of the animals i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others by partitions during the cremation process; and in which the commingling of significant amounts of cremation remains from different animals is unlikely to occur.

137)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138)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Communal cremation” means a cremation process in which companion animals are cremated together without effective partitions or separation during the cremation process, and in which the commingling of significant amounts of cremation remains from different animals is likely or certain to occur.

139) “Commingling of significant amounts of cremation remains from different animals” means that specific cremation remains cannot be attributed to a particular animal, or that the cremation remains attributed to one companion animal contain more than 1% by weight of cremation remains from one or more other companion animals. The presence, in the cremation remains of a companion animal, of the remains of any creature that was contained within the body of that animal at the time of cremation (including parasites, insects, and food or creatures eaten by that companion animal) does not

화장 당시 반려동물의 신체에 남아 있던 물질(숨진 반려동물이 먹은 해충, 곤충, 음식물 또는 먹잇감 등)은 이 법에서 말하는 “섞임”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⁴⁰⁾

③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공자

이법에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공자”는, 일리노이주에서 숨진 반려동물의 화장(火葬)과 관련된 일을 하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를 말한다.¹⁴¹⁾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함)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서면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서면 설명서는 브로셔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브로셔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¹⁴²⁾ 서비스에 대한 서면 설명서는 반드시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화장 전 또는 후에 제공자가 숨진 반려동물의 특정 부분을 제거, 사용 또는 판매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서면 설명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¹⁴³⁾ 제공자가 이 법에 따른 서면 설명서를 준비하거나 배포¹⁴⁴⁾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는 영업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처음 위반한 경우 \$ 1001 이상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후 누범에 대해서는 \$ 2000 이상 \$

constitute “commingl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140)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141)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Provider of companion animal cremation services” or “provider” means a person, company, or other entity engaging in the business of cremating deceased companion animals in Illinois.

142) (815 ILCS 318/10) Sec. 10. Written explanation of services.(a)

143) (815 ILCS 318/10) Sec. 10. Written explanation of services.(a)

144) (815 ILCS 318/10) Sec. 10. Written explanation of services.(c)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로 서비스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i) 서비스 제공자가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숨진 반려동물의 반려인 또는 반려인을 대신해 화장을 준비하는 자, ii) 정기적으로 제공자에게 반려인을 위탁하거나 숨진 반려동물을 가져다주는 모든 동물병원, 애완동물 매장, 기타 개인 또는 단체, 특히 반려인 및 관련자, iii) 법무부(최소 매년 정기적으로), iv) 자료를 요청하는 자.

2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¹⁴⁵⁾ 서비스에 대한 서면 설명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는데, i)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제공될 화장 서비스에 대한 상세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제공하는 화장 서비스의 형태 및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ii) 공동화장 절차 또는 동시에 하나 이상의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개별 분리 화장절차와 관련하여 “전용”(private) 또는 “개별”(individ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iii) 공동화장과 관련하여 개별 분할”(individually partitioned) 또는 “분리”(separat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iv)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의 본질과 관련하여 오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서비스에 관한 서면설명서 중 특정 부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문자, 사진, 그림 또는 이모두를 포함하거나 레이아웃(배치), 활자,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간주한다.¹⁴⁶⁾

④ 위탁 또는 중계자

이 법에서 위탁자 또는 중계자는, 반려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i) 반려동물 화장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또는 대행관계(agency relationship)에 있거나, ii) 제공자의 반려동물 화장과 관련하여 제공자 또는 반려인으로부터 보상 또는 보수를 받거나, iii) 한 달에 평균 5회 이상 제공자에게 화장 관련 일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¹⁴⁷⁾ 위탁자는 보통 정기적으로 제공자에게 숨진 반려동물의 반려인을 중계하는 수의사, 애완동물 매장, 기타 개인 또는 사업체들인데, 이들은 위탁자인 반려인들이 제공자의 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려인 또는 반려인을 대신하는 수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서비스에 관한 서면 설명서 부분을 제공하면

145) (815 ILCS 318/10) Sec. 10. Written explanation of services.(d)

146) (815 ILCS 318/10) Sec. 10. Written explanation of services.(b)

147) (815 ILCS 318/5) Sec. 5. Definitions.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¹⁴⁸⁾

(4) 뉴욕주

뉴욕주의 경우, 1890년대에 이미 하츠데일 애완동물 묘지¹⁴⁹⁾가 조성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앞선 부분이 많은 만큼, 관련 법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뉴욕주의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¹⁵⁰⁾ 제750조에서는 정책선포를 하여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무장관은 반려동물 묘지 및 화장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그 감사비용은 감사 대상 묘지 및 화장장이 부담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¹⁵¹⁾ 동 세칙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 및 반려인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상 “반려동물(pet)”이란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적응하고 길들여진 개, 고양이, 설치류, 어류, 조류, 뱀, 거북이, 도마뱀, 개구리, 토끼 등 모든 애완동물을 말한다.¹⁵²⁾ 동 세칙상 “반려동물 소유자”(Pet owner, 이하 “반려인”이라 한다)란, 수의학기록이나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터 기록에 반려동물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을 말한다.¹⁵³⁾ 이러한 반려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그 법적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운영세칙 제

148) (815 ILCS 318/15) Sec. 15. Persons referring or bringing business to a provider.

149) <http://www.petcem.com/>

150) 뉴욕주 New York State,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허가서비스과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제35-C,

151)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750-c. (Powers of the Secretary of State)

152) §750-a. (Definitions)

153) §750-a. (Definitions)

750-s조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처분신청서 작성을 위한 반려인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② 반려동물 묘지

동 세칙에서 “반려동물 묘지”(pet cemetery)는 이윤추구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수의사나 일반 대중의 이용과 향후 이용을 위한 예약, 반려동물 사체의 지상 또는 지하 영구매장이나 납골당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유료로 제공하는 토지, 공간, 구조물, 시설 또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농업및시장에관한법(Agriculture and Markets Law)」 제5-C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처리 공장(rendering plant) 및 고형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쳐 발생한 잔유폐기물이 버려지고 고형 폐기물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매립지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장은 반려동물 묘지로 보지 않는다.¹⁵⁴⁾ 반려동물 묘지는 반려동물 묘지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부지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묘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시설, 건물을 포함하여 전체면적 5 에이커 이상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¹⁵⁵⁾ 국무장관은 지상 묘(entombments)의 수, 매장된 반려동물 사체의 수, 주변 지역사회 특성 등의 요인에 기초하여 부지의 최저면적 제한기준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동 운영세칙의 내용은 동 조항이 제시한 부지면적보다 더 넓은 부지요건을 제시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제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¹⁵⁶⁾ 다만, 연간 반려동물 매장 수가 5구 미만이고, 반려동물 분묘관리 또는 해당 부지의 묘지 전용에 대하여 그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반려동물 묘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반려동물묘지는 동 운영세칙상의 부지면적조항¹⁵⁷⁾, 토지이용 신청관련 사항,¹⁵⁸⁾ 반려동물 묘지 관리기금 또는 유사

154) §750-a. (Definitions)

155) §750-p. (Area requirements for pet cemeteries)

156) §750-p. (Area requirements for pet cemeteries)

157) §750-p. (Area requirements for pet cemeteries)

158) §750-n. (Dedication of real property for pet cemetery purposes)

신탁기금관련 사항¹⁵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¹⁶⁰⁾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 및 운영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¹⁶¹⁾

- i) 각 반려동물 분묘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분묘 위치, 분묘 소유자의 최근 주소, 매장일, 분묘 크기, 분묘 거래계약, 반려동물 처분신청사를 포함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동 조항은 개별 매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ii) 신탁계정의 수탁자 성명 및 신탁기금 금액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iii) 반려동물 분묘의 영구적 유지관리와 1년 단위 유지관리 방식의 비용과 혜택을 비롯한 반려동물 분묘의 유지관리 옵션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iv) 반려동물 묘지와 반려동물 화장장 감사를 위하여 국무장관이 지명한 감사관의 모든 타당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v) 고객이 반려동물 묘지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반려동물묘지는 그 소유자가 전문수의사이거나, 농업생산용지에 위치한 경우 부지면적조항¹⁶²⁾, 토지이용 신청관련 사항,¹⁶³⁾ 반려동물 묘지 관리기금 또는 유사 신탁기금관련 사항¹⁶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¹⁶⁵⁾ 또한 개별매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개별 묘석(grave markers)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반려동물 분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반려동물 분묘 관리에 대한 내용이나 해당 부지가 전용 용지임을 표

159)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160) §750-uu. (Small pet cemetery exclusion)

161) §750-v. (Duties of pet cemetery owners and operators)

162) §750-p. (Area requirements for pet cemeteries)

163) §750-n. (Dedication of real property for pet cemetery purposes)

164)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165) §750-u. (Veterinar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exclusions) 1.

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¹⁶⁶⁾

③ 반려동물 묘지 관리기금 등

뉴욕주에서는 이 운영세칙의 효력발생일부터 또는 효력발생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반려동물 묘지는 연관리비 수령에 앞서 반려동물 묘지의 영구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12000 이상 규모의 관리기금 또는 유사 신탁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¹⁶⁷⁾ 이 운영세칙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반려동물 묘지의 경우에도 관리기금 또는 유사신탁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며, 1999년 1월 1일 기준 기금의 잔고가 \$ 12,000이상이어야 하나, 국무장관은 관리기금 또는 유사신탁기금이 설립되고 동 운영세칙 효력발생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당한 기간 안에 해당기금에 \$ 12,000이 예치되고 동 조항의 규정이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경우 동조항을 예외로 할 수도 있다.¹⁶⁸⁾ 또한 국무장관은 동물보호협회 형태의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반려동물묘지에 대해서는, 반려인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고 동 조항의 규정이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¹⁶⁹⁾

관리기금 또는 유사 신탁기금의 수탁자는 「신탁관련법(Estates, Powers and Trusts Law)」 제11-2.2에 따라 해당 기금을 투자할 권한이 있는데, 신탁기금의 이자소득은 전적으로 해당 반려동물 묘지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신탁기금 및 옵션의 원금 배당은 해당 반려동물 묘지 소재 카운티 1심법원의 명령¹⁷⁰⁾이 있을 경우에 한

166) §750-u. (Veterinar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exclusions) 2.-5.

167)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2.

168)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1.

169)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5.

170)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3. 원금 배당이 반려동물 묘지의

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그리고 반려동물 묘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목적에 한하여 이루어진다.¹⁷¹⁾ 관리기금 또는 유사 신탁기금의 규모가 \$1,000,000 이상인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반려동물 묘지는 잉여 이익 사용이 신탁기금의 온전성을 위해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 묘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더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서 또는 내규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기금의 잉여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⁷²⁾ 이러한 신탁기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불확정 또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효화 되지 아니하며, 영대 소유권(perpetuities) 금지 규정 위반에 의한 무효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¹⁷³⁾

④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허가

i) 허가 신청

뉴욕주에서는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에 따라 1993년 7월 31일 이후, 동 운영세칙에 따른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유료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¹⁷⁴⁾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¹⁷⁵⁾

토지이용 신청 해지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의 원금 배당 명령은 해당 반려동물 묘지의 영구적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준비를 추가로 마련하여야 한다.

171)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3.

172)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4.

173) §750-r. (Endowment care or similar trust funds) 6.

174) §750-b. (License required) 또한 허가의무 조항에서는 동 운영세칙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자가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에 도움을 줄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75) §750-e. (License; application) 1.

a) 신청자 성명과 주소 :

개인인 경우 - 신청자가 운영할 사업체명,

합작인 경우 - 각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운영할 사업체명,

법인인 경우 - 회사명, 회사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성명과
회사주소

b) 해당 사업이 수행될 곳의 주소를 포함한 사업장 위치

c) a)에 명시된 모든 관계자의, 묘지·반려동물묘지·화장장·반려동물
화장장 운영 및 자금관리 관련 모든 경험에 대한 요약 자료

d) 올바른 도덕성을 증명할 증빙자료

e) 국무장관이 규칙과 규정으로 명시할만한 추가 정보

국무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¹⁷⁶⁾

a)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영업허가가 국무부에 의해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b) 최근 5년 이내에 뉴욕주 법에 따라 사기, 뇌물, 위증, 절도 혐의
로 인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뉴욕주에서 저지른 위법행
위로 기소될 경우 유사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상 범법행위로 다
른 주 또는 미합중국 법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운영세칙에
따른 영업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¹⁷⁷⁾

a) 사기 또는 뇌물을 이용해 허가를 취득한 경우

b) 동 운영세칙이 요구하거나 동 운영세칙에 따른 신청서 내용 또는
기타 기재사항, 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76) §750-e. (License; application) 2.

177) §750-h. (Denial of license application and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licenses) 1.

- c)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에 불성실한 경우
- d) 동 운영세칙이 정한 영업증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 e) 동 운영세칙의 조항이나 이에 따른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f) 사기, 절도, 위증이나 뇌물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허가 신청에 따른 자격 상실로 이어질만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 g) 반려동물 처분 신청서 접수 후 2년 동안 그 신청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h) 동 운영세칙 §750-v에 명시된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I) 동물 학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 및 시장에 관한 법」(the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제26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반려동물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허가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리고 국무장관이 동 운영세칙 §750-e에 따라 그 영업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회복되거나 재발급되지 않는다.¹⁷⁸⁾

ii) 영업허가의 갱신 등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모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¹⁷⁹⁾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을 위한 허가증은 허가받은 영업권자가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을 영위하는 사업장 안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¹⁸⁰⁾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없는 허가는 동 운영세칙에 명시된 갱신료¹⁸¹⁾가 지불되고, 국무장관이 정한

178) §750-h. (Denial of license application and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licenses) 2.

179)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1.

180)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5.

181) §750-g. 수수료(Fees)

1.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 사업을 위한 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양식에 따른 갱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¹⁸²⁾ 만료일로부터 추가로 유효기간 2년이 갱신될 수 있다.¹⁸³⁾ 최근 영업허가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허가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갱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60의 지연수수료를 내야하고, 90일 이내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갱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동 운영세칙상의 준수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영업허가 취득자격을 갖지 못한다.¹⁸⁴⁾

주소변경과 관련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허가받은)영업권 소유자는 사업장 주소,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지 변경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의 알바니(Albany) 집무실 주소로 서면신고서를 반납 허가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허가증 앞면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서(endorsement)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서된 허가증은 허가증 소유자에게 반송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이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허가증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된다.¹⁸⁵⁾

\$150로 한다. 허가 갱신 수수료는 각각 \$150로 한다.

2. 허가증의 분실,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부분 발급 수수료는 \$25로 한다.
 3. 상호 또는 주소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한다.
 4. 상기에 명시된 수수료는 허가기간을 2년 또는 2년 중 일부 기간으로 하여 발급된 허가증에 해당하는 수수료이다.
 5. 본 조의 1부터 4에 명시된 수수료는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을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2)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8. 허가증 부분은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동 운영세칙에 따른 수수료 지불이 완료된 경우에, 허가증의 1회 분실,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급될 수 있으며, 허가증부분의 앞면에는 “부분”날인이 찍혀있어야 하고, 해당 부분이 대체한 원본과 동일한 허가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 183)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6.
- 184)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7.
- 185)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8.

iii) 허가의 승계, 양도 등

뉴욕주에서의 동물장묘업 허가는 동 운영세칙에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 또는 양도할 수 없다.¹⁸⁶⁾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¹⁸⁷⁾

- a) 개인이 받은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업 허가: 그 허가의 승계 또는 양도 당시에 남아있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하여 합작회사의 구성원 또는 법인의 직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수 있음
- b) 합작회사가 받은 허가: 남아있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합작회사의 구성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수 있음, 단, 합작회사의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c) 법인이 받은 허가: 남아 있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해서 해당 법인의 직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수 있음. 단, 해당 법인의 모든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러한 승계 또는 양도 신청에는 앞서의 ‘i) 허가신청’(§750-e)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국무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허가증 앞면에 국무부에 의한 승인이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승계나 양도는 효력이 없다. 이서된 허가증은 피승계인 또는 피양도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승인 이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영업권자로부터 해당사업을 양수받은 정당한 양수인(*bona fide purchaser*)은 사업인수일로부터 해당 영업권의 사용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허가증 앞면에 영업양수인 성명, 사업인수 일자, 영업 허가증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고, 동 운영세칙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인은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업 운영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6)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2.

187)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3. 이하 같은 항의 내용임

국무장관이 영업양수인의 영업허가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기 전까지 해당 영업증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개인 또는 합작회사가 받은 반려동물 장묘업 허가는, 해당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공동대표의 사망 이후에도 직계 친족이나, 정식으로 임명된 관리자 또는 집행자가 해당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공동대표의 사망일부터 기존의 사업장 명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허가증 앞면에서 사망자 성명 옆에 “사망”이라는 표시, 사망일자, 그리고 영업허가증 사용권한이 있는 직계친족, 관리자 또는 집행자는 동 운영세칙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동물장묘업 영위를 위한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직계 친족, 관리자 또는 집행자의 영업허가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기 전까지 그 영업허가는 효력이 없다.¹⁸⁸⁾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¹⁸⁹⁾

(1) 현 황

일본의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애호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¹⁹⁰⁾에서는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188) §750-f. (Licenses; display; renewal; duplicates) 4.

189) 이하 일본의 동물사체처리 법제 현황의 내용은 『업종추가의 검토 「동물의 사체 화장 장례업자」에 대해서』(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라는 일본 환경성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번역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www.env.go.jp/council/14animal/y143-08/mat01.pdf>(검색일: 2015년 7월 24일, 금).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되, 약간의 분류를 다시 하여 소개하고, 각주의 내용도 필요한 경우 원문대로 인용하였으며, 현황개요표 및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표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였음을 밝혀둔다. 법조문의 경우 각주로 처리한 부분도 있는 만큼, 원문내용과의 비교를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중간에 각주로 해당 인용항을 명시하였다.

190)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제10조(동물 취급업의 등록) 동물(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

며,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 업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¹⁹¹⁾

<현황의 개요>

업종	영업의 내용	해당 업자의 예
판매	동물의 도·소매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번식 또는 수출입(그 중개 또는 대리 포함)	○ 소매업자 ○ 도매업자 ○ 판매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업자 ○ 노점 등에서의 판매를 위한 동물 사육업자 ○ 사육시설 없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보관	보관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물을 맡는 일	○ 애완동물 호텔업자 ○ 미용업자(동물을 맡는 경우) ○ 애완동물 시터
대여	애완, 촬영, 번식 그 밖의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사업	○ 애완동물 대여업자 ○ 영화 등의 텔런트·촬영 모델·사육 용 등의 동물과견업자
훈련	고객의 동물을 맡아 훈련 시키는 일	○ 동물 훈련·조교업자 ○ 출장 훈련 업자
전시	동물을 보여주는 일(동물과의 접촉 제공 포함)	○ 동물원 ○ 수족관 ○ 이동 동물원 ○ 동물 서커스

류에 한하며, 축산 농업에 관한 것 및 실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용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 및 다음 절에서 같다) 취급업[동물 판매(그 중개 또는 대리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보관, 대출, 훈련, 전시(동물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취급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물취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을 하려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지방 자치법」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 도시”라 한다)에서는 그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절,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4절에서도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1頁(1).

191) 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1頁.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업 종	영업의 내용	해당 업자의 예
		○ 동물 접촉 테마 파크 ○ 승마 시설·애니멀 테라피업자(「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실험동물, 산업동물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대상

최근 일본에서는 동물애호관리법 제10조의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의 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제기되고 있다.¹⁹²⁾

첫째, 동물취급업에 동물 사체의 취급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동물애호관리법 제2조의 기본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동물 취급업에 동물사체의 취급을 포함한다면 현행 동물취급업(등록제)과 같이 할 것인지, 새로운 범주로 보아 신고제로 운영할 것인지 문제된다. 셋째, 화장을 하지 않는 장의·장례만의 업종 형태(화장은 타사에 위탁)도 규제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사람의 경우 규제하고 있지 않음)가 문제된다.¹⁹³⁾ 넷째, 동물 사체의 취급을 업으로 규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제할 것인지 정령으로

192) 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2頁.

193) ‘사람의 사체’에 관한 규정 현황을 보면, 먼저 장례의 경우 사람의 사체에 대한 장의·장례를 집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인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영구차 등을 사용하여 사체를 반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사업자 운송사업의 허가가 필요하다(環境省, “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3頁). 화장·매장·묘지 등의 경우, 화장장, 묘지 및 납골당을 경영하려는 자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도부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장, 매장 및 개장(소장하고 있는 분골을 다른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일 등)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체에 대한 예의(禮儀)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체해부보존법」 제20조에는 “사체를 해부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자는 사체를 취급할 때 특히 예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식품위생법」 제59조제4항에는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에는 예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체취급규칙」(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 제5조에는 “사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체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5頁.

규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섯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동물애호관리법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범위, 주요 준수 의무의 내용)은 어떻게 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섯째, 동물 사체의 취급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그 시행까지의 경과기간이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일본 동물취급업계의 주된 의견은 악덕업자가 도태되고 선량한 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물 사체의 취급도 동물애호관리법의 동물취급업(등록제)에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동물사체에 관한 규정의 현황

① 동물애호관리법

동물애호관리법 제2조에서는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점에 비추어” 적당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도도부 현 등은 ...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여 “동물의 사체”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¹⁹⁴⁾

○ 동물 애호 관리법 (발췌)

제 2 조(기본원칙) 동물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점에 비추어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는 괴롭히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공생에 배려하면서 그 습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다친 동물 등을 발견한 사람의 통보 조치) ①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질병에 걸렸거나 다친 개, 고양이 등의 동물 또는 개, 고양이

194) 동물애호관리법 제36조에서 “동물의 사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동물의 사체가 공공장소에 방치됨으로써 그 장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동물애호에 관한 감정 등이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 “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2頁).

이 등의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는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도부현 등은 전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면서,¹⁹⁵⁾ 통지에 의하여 “동물장묘업에서 취급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도도부현지사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폐기물처리법 제8조).¹⁹⁶⁾

③ 동물의 사체 소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해 방지관련 법령

이와 관련하여 「악취방지법」 제3조에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악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제 지역 내에서는 모든 공장 그 밖의 사업장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고, 「대기 오염 방지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의 시체를 소각하는 시설¹⁹⁷⁾에 대하여는 법 제6조에 따른 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195) 폐기물처리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대형폐기물, 석탄재 ...,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그 밖의 다른 오물 또는 찌꺼기로서, 고형 또는 액상의 것 ...을 말한다.

196) 일본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체 1구당 수수료(가와쿠치시 5,400엔)를 징수하고 동물사체소각시설에서 별도로 처리된다[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이슈”, 이슈&진단 제188호. 경기연구원, 2015. 6, 5면].

197)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불받이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각 능력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 소각로를 말한다.

신고,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 유해 물질 등의 배출 기준 준수 등의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며(법 제2조제2항 및 제6조),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사체 소각시설(법 제2조제2항의 “특정 시설”)¹⁹⁸⁾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가스(대기)에 관한 배출기준의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¹⁹⁹⁾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1)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현재 일본에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는 주로 i) 주인이 스스로 처리(자기소유 토지에 매장하는 등)하거나, ii) 주인이 지방공공단체(청소국 등)에 처리의뢰(소각) 하거나 iii) 주인이 민간 사업자 또는 사원 등에 처리의뢰[화장, 반골(返骨), 매장 등]하는 등의 방법²⁰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요강, 요령, 지침등으로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현황과 관련하여 환경성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¹⁾

198)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정시설”이란 바닥면적(폐기물 소각시설에 두 개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이 0.5 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각능력(폐기물 소각시설에 두 개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각 능력의 합계)이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 소각로를 말한다.

199) 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7頁

200) 이와 관련하여 사이타마(埼玉)현 한노(飯能)시에서는 사업자가 주인이 맡긴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 및 반골(返骨)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環境省, 業種追加の検討“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4頁).

201) 別添 1, 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火葬等を行わない葬祭業者を含む)の設置・営業等の規制にかかる条例等の制定状況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다현	가타 가미시	가타가미시 반려동물 묘 지 설치의 적 정화에 관한 조례	○	○	○	○			○	○	○	
	요코 테시	요코테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류가 사키시	반려동물 화 장장 등의 신 설 등에 관한 조례			△ 설명		○					
	기타이 바라 키시	반려동물 묘 지 설치 규 제 조례	○	○		○			○			
	우시 쿠시	반려동물 화 장장 등의 신 설 등에 관한 조례			△ 설명		○					
	고카 마치	반려동물 묘 지 등 설치 적 정화에 관한 조례	○	○		○			○			이 동 가 능한 시 설 포함
	도리 테시	반 려 동 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		
	도카 이무라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허 가 등에 관한 조례	○	○	○	○			○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모리 야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허 가 등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히다 카시	히다카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야시 오시	야시오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	이 동 시 설은 조 례 대 상 아님
	토코로 자와시	토코로자와시 도 시 만 들 기 조례 제21조			△ 설명	△ 협의						
	이루 마시	이루마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	
	사카시	사카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 한 지도요강	○	○	△ 설명		○					
	아게시	아게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	○	○	○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시라오 카마치	시라오카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	○	
	고노 스시	고노스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협의			○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기타 모도시	기타 모 도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협의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오케 가와시	오케 가 와 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카조시	카조시 반려 동물 묘지 등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소 각 로 가 있는 시설 불 허가
	이나 마치	이나마치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도키가 와마치	도키가와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나가토 로마치	나가토로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하뉴시	하뉴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	○	△ 설명	○			○			소 각 로 가 있는 시설 불 허가
	혼조시	혼조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의 적 정화에 관한 조례	○	○	○	○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쿄다시	쿄다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	○	△ 설명	○			○			토 지 소 유 자 만 해당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카와시 마마치	카와시마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미야시 로마치	미야시로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지도 요강	○	○	○	△ 동의			○			
	미나 노마치	미야노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요코 제마치	요코제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허 가 등에 관한 조례	○	○	○	○			○			
	한노시	한노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 한 지도요강	○	○	△ 설명	○			○			오 로 지 정 위 치 에서 사 용 하 는 것에 한 한다.
	요시 카와시	요시카와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오가 노마치	오가노마치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			○			
	후카 야시	후카야마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허 가 등에 관한 조례	○	○	○	○			○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쿠마 가야시	쿠마가야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허 가 등에 관 한 조례	○	○	○	○			○			H23. 1. 1. 시행
치바현	아비 코시	아비코시 반려 동물 묘지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	이동화장 장은 화 장의 도 에 신고 가 필요
	나가레 야마시	나가레야마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허 가 등에 관한 조례	○	○	○	○			○		○	
	가마 가야시	가마가야시 반려동물 묘 지의 허가 등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이치 하라시	이치하라시 반려동물 묘 지설치의 적 정화에 관한 조례	○	○		○			○			
도쿄도	오타구	오타구 반려 동물 화장장 등의 설계의 사전공개 등 에 관한 요강			△ 설명		○			○	○	
	이타 바시구	도쿄도 이타 바시구 반려 동물 화장장 등의 설치 등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네리 마구	네리마구 마을 만들기 조례		○	△ 설명		○					
	에도 가와구	에도가와구 반 려동물 화장장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 설명		○			○		이동화장 차의 기 준 있음
	하치 오지시	하치오지시 시 민의 생활환경 보호 조례										
	다치 가와시	다치가와시 반려동물 화 장장 등의 설 치 등에 관한 지도요강		○	○		○			○		이동화장 차의 신 고 필요
	아키 루노시	아키루노시 도시환경조례	○			△ 동의						
가나가와현	히라 즈카시	히라즈카시 마을 만들기 조례	○	○								
	가마 쿠라시	가마쿠라시 동물묘지의 설치에 관한 지도요강	○	○	△ 설명		○					종 교 법 인이 자 기 소 유 지 에 서 하 는 경 우 는 적 용 제 외
	하다 노시	하다노시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에 관 한 지도요강	○	○	△ 설명	△ 동의						이동화장 차를 포 함한다.
	아쓰 기시	아쓰기시 반려 동물 묘지 등 의 설치에 따 른 환경보전에 관한 요강	○	○	△ 설명	△ 동의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야마 토시	야마토시 반 려동물의 설 치 등에 관 한 요강	○	○	△ 설명	△ 협의						
	오이 마치	오이마치 동물 묘지의 설치에 관한 요강	○	○	○	△ 동의						토지소 유자만
니가타현		니가타현 화 제장 등에 관 한 법률 시행 조례	○	○		○	○					
		니가타현 화 제장 등에 관 한 법률 시행 세칙										
도야마현	뉴젠 마치	뉴젠마치 반 려동물 묘지 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도미 카초	도미카초 반 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	○	△ 설명	○				○		
		도미카초 반 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시행 규칙										
시즈오카현	마키노 하라시	마키노하라 시 반려동물 묘지 조례	○	○	○	○			○			토 지 소 유자만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아이치현		동물처리장 등에 관한 조례	○	○			○	○				무 허 가 영 업 은 3 만 엔 이하의
	오와리 아사 히시	오와리아사히시 반려동물 묘지의 신설 등에 관한 조례, 오와리아사히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설명		○					
미에현	이가시	이가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고나한 조례, 이가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쓰야 마시	쓰야마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등에 관한 요강		○	△ 설명	△ 동의						
	하야 시마초	하야시마초 반려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히로시마현												
아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가라쓰시	가라쓰시 반려동물 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나카시키현	이키시	이키시 반려동물 묘지 조례	○	○	○	○			○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												
오사카시												
나고야시		동물처리장 등에 관한 조례(아이치현 조례)	○	○					○	○		무 허 가 영 업 은 3 만 엔 이하의
		동물처리장 등의 규제에 관한 요강										
교토시												
요코하마시												
고베시		고베시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지도요강	○		△ 설명	△ 동의						
기타큐슈시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삿포르시		삿포르시 반려 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지도요강	○	○		△ 협의						오 로 지 정 위 치 에 서 만 사 용 하 는 것 에 한한다.
		삿포르시 반 려동물 화장 시설 설치에 관한 지도요 강 운영요령										
가와사키시												
후쿠오카시												
히로시마시												
센다이시												
치바시		치바시 반려 동물 묘지 설 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토지소 유자만
		치바시 반려 동물 묘지 설 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										
		치바시 반려 동물 묘지 설 치 허가 등에 관한 사전협 의 실시요강										
사이타마시												
시즈오카시												
사카이시												
니가타시												
하마마츠시												
오카야마												

제 3 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사가미 하라시		사가미하라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조례	○	○	△ 설명	○			○			· 토지소 유자만 · 허가 신 청 수수 료 있음
우즈노 미야시												
도야마시												
가나자와시												
기후시												
히메지시												
구마모토시												
가고사마시												
아키다시												
고리아마시												
와카야마시												
나가사키												
오이타시												
토요타시												
후쿠야마시												
고치시												
미야자키시												
이와키시												
나가노시												
도요하시시		도요하시시 화재장 등에 관한 법률 시 행조례 도요하시시 화재장 등에 관한 법률 시 행세칙	○	○		○						
다카미쓰시												
이시카와												

제 2 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의 명칭	기 준			허가, 협의	신고	벌칙	취소	적용제외		비 고 (이동 화장차에 대한 규정 등)
			입지	구조 설비	주변 주민의 동의					묘지 매장법	자기 소유 동물의 매장	
마쓰야마												
요코스카시												
나라시												
쿠라시키시												
카와고에시												
후나바시시												
오카자키시		오카자키시 물과 녹음· 역사와 문화 의 마을만들 기 조례 오카자키시 물과 녹음· 역사와 문화 의 마을만들 기 조례 시 행규칙	○		△ 설명	△ 협의						이 동 시 설은 대 상 에 서 제외
타카츠키시												
히가시오 사카시												
하코다테												
시모노 세키시												
아오모리시												
모리오카시												
카시와시												
니시노 미야시		반려동물 묘 지의 설치 등 에 관한 지도 요강	○	○	△ 설명		○					
쿠루메시												
마에바시시												
오즈시												
아마가사 키시												

(2) 카츠키카베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

일본은 15개현의 58개 지역에서 조례, 시행규칙, 지도요강, 세칙 등의 형태로 동물사체 화장, 매장업자, 즉, 동물장묘업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9개 시에서 조례, 지도요강, 요강 및 요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카츠키카베시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²⁰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³⁾

① 배경 및 목적

동 조례안의 배경 설명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자가 증가됨에 따라, 반려동물 화장터나 묘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묘지 등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묘지의 설치 등을 규제하는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반려동물 묘지 등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²⁰⁴⁾ 이에 카츠키카베시는 반려동물 묘지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며²⁰⁵⁾, 반려동물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공중보건 및 복지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반려동물과의 공생을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반려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2달 동안 허가받지 않고 해당 묘원을

202)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http://www.kasukabe-shigikai.jp/voices/GikaiDoc/attach/Gk/Gk796_88.pdf

203) http://www.city.kasukabe.lg.jp/kankyou/kurashi-k/bochi/documents/peppureien_joureian.pdf

204)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の制定の目的

205) 조례안의 취지에서는 반려동물 묘지 등은 동물의 사체와 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이므로 그 설치 장소 및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혹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불 때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을 수반하는 경우 대기오염, 악취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려동물 묘지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화장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city.kasukabe.lg.jp/kankyou/kurashi-k/bochi/documents/peppureien_joureian.pdf) - 검색일 2015. 7. 16(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람은 동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²⁰⁶⁾

② 정 의

동 조례의 정의조항에서는 화장, 매장, 분묘, 묘지, 납골당, 화장장, 반려동물 묘원, 이동화장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²⁰⁷⁾ 반려동물묘원은 묘지, 납골당, 화장장 또는 이들을 병행하여 가진 시설을 말하며, 오로지 자기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화장차량은 ‘화장용광로’를 탑재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2006년 이동화장차량에서 증거은폐를 위해 사람의 시체를 소각한 사건이 발생²⁰⁸⁾하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가타시의 경우는 조례 초안에서 이동화장차량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검토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언급한 바 있다.²⁰⁹⁾ 일본의 이동화장차량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인 동물화장이 문제되고 있다.²¹⁰⁾ 카츠키베시의 경우는 이동화장차량에 대해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장소에서 화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²¹¹⁾

③ 동물장묘업 허가

i) 허 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카츠키베시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허가제로 운영함을 밝히고 있다.²¹²⁾ 카츠키베시에서

206) 附則 3

207)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2条

208) 이해은, “일본의 동물 장묘관련 법률”, 「동물장묘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11., 13면.

209) (仮称)「新潟市ペット霊園の設置等に関する条例」第1回検討委員会 議事録

21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79148 - 검색일 2015. 4. 21. 화.

211)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7条

212) http://www.kasukabe-shigikai.jp/voices/GikaiDoc/attach/Gk/Gk796_88.pdf - 검색일 2015.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묘지 지역, 납골당 또는 화장터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반려동물 묘원이 영구적으로 설치될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및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³⁾ 반려동물 묘지의 설치허가 또는 묘지지역 또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와 관련한 반려동물묘원의 공사가 완료한 후 신속하게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완료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완료검사합격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반려동물묘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²¹⁴⁾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서 면적을 확장하지 않는 경우, 기존 납골당 및 화장터에서 건축물의 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반려동물 묘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²¹⁵⁾ 시장에게 제출된 계획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이하 “관계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계획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²¹⁶⁾, 관계 주민 등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⁷⁾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받지

7. 16(화).

213)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4条

214)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15条

215)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5条

216)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7条

217)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8条

않고 반려동물묘지를 설치하거나, 묘원 시설을 변경한 경우, 동 조례에 따른 시장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및 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반려동물 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²¹⁸⁾

ii) 신고의무, 보고 등

묘원 설치자로부터 반려동물묘원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즉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²¹⁹⁾ 또한 반려동물묘원의 명칭, 반려동물 공동묘지 부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설치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묘지의 구획수(묘지구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 관리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신속하게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²²⁰⁾ 묘원 설치자가 반려동물 묘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려동물묘원에 매장되어 있거나 소장하고 있는 동물의 뼈 등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²²¹⁾

시장은 묘원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²²²⁾

④ 동물장묘시설 설치 기준 등

i) 묘지의 설치 기준 및 시설 기준 등

동 조례에 따라 묘지는 하천 또는 호수의 경우 묘지까지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공원, 학교, 보육시설, 병원, 기타 규칙

218)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27条

219)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20条

220)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21条

221)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22条

222)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第23条

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서 묘지까지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식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묘지를 설치한 이후에 해당 묘지를 설치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위의 기준거리 안에 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장이 공중 보건, 기타 공공복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²²³⁾

묘지의 경계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높이의 장벽, 울타리 등을 세워야 하며, 각 분묘²²⁴⁾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축조된 폭 1미터 이상의 연결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빗물 또는 오수에 따른 배수설비, 급수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²²⁵⁾를 설치해야 한다.²²⁶⁾

ii) 납골당의 시설 기준 등

납골당의 시설은 내화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석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축조해야 하고, 내부설비는 건축기준법에 따른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환기 및 제습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과 납골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여야 한다.²²⁷⁾

iii) 화장장의 시설 기준 등

화장터의 경계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높이의 장벽, 울타리 등을 세워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고, 배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²²⁸⁾가 설치되

223)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0条

224) 분묘는 반려동물의 사체 및 뼈 등을 매장하는 것이어야 한다(第11条).

225)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설치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第11条).

226)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1条

227)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2条

228)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설치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第11条).

어야 한다.²²⁹⁾ 이동화장차의 화장로를 포함하여 화장장의 화장로는 사이타마현 생활환경보전 조례²³⁰⁾ 및 사이나마 현 생활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²³¹⁾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소각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²³²⁾

229)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4条

230) 平成13年埼玉県条例 第57号

231) 平成13年埼玉県規則 第100号

232)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第14条

제 4 장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제 1 절 법적 개념의 정비

1.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

우리 법에서 현재 동물장묘업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다.²³³⁾ 그러나 이렇게 규율 대상이 되는 동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게 되면, 열거되지 않은 동물과 관련하여 규제 혹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컨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마뱀이나 앵무새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던 사람이 해당 도마뱀이나 앵무새가 죽은 후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루고 동물전용 납골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규제 혹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관련 법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정의하는 입법례들을 참고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개, 고양이, 조류, 토끼, 햄스터를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²³⁴⁾, “반려 또는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동물”²³⁵⁾,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적응하고 길들여진 개, 고양이, 설치류, 어류, 조류, 뱀, 거북이, 도마뱀, 개구리, 토끼 등 모든 애완동물”²³⁶⁾ 등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율 대상을 정하

233) 「동물보호법」 제3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234) Primary Citation: VA Code Ann. §§ 57-39.20 - 57-39.25. Country of Origin: United States. Last Checked: October, 2014. Alternate Citation: VA ST §§ 57-39.20. Definitions.

235)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236)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750-a. (Definitions)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려(伴侶)”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주체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2. 반려동물 사체의 별도취급 여부

일본의 경우 ‘동물취급업에 동물 사체의 취급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해지고 있는데, 일본의 「동물애호관리법」 제2조에서 “동물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⁷⁾ 우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²³⁸⁾이라는 표현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유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에 한정하여 동법을 적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이상, 동물장묘업의 경우는 이러한 생명이 있는 존재인 동물이 죽은 경우의 그 사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물장묘업의 경우는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동물 사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던 동물’의 사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반려동물 화장법」에서는 법 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숨진 당시 반려인(소유주)와 반려 또는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죽은 동물’이라고 규정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 ‘죽은 동물’ 즉, 동물의 사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도 한데,²³⁹⁾ 이와 같이 반려동물 사체 관련 사항을 별도로 취급할 것인

237) 環境省, “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2頁. ;

재인용 - <https://www.env.go.jp/council/14animal/y143-08/mat01.pdf>(검색일: 2015년 7월 24일, 금). p. 2.

238)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239) (815 ILCS 318/5) 「Companion Animal Cremation Act」, Sec. 5. Definitions. “Com-

지, 다른 동물취급 형태와 함께 규율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 생각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해당 동물사체는 폐기물취급을 받지 않지만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는, 가정이나 다른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어, 동일하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던 동물이라 할지라도,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원적 규제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던 동물의 사체’를 취급할 때에 어떻게 이를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반려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관념을 법적으로 특정하려면 이를 범주화할 법적인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의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등록된 동물이 죽었을 때 해당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체’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동물화장(火葬)의 분류

사람의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경우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각 시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화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의 경우 개별화장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공동화장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동물화장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미국의 일부 주나 프랑스의 경

panion animal” or “animal” means a deceased animal that had a companion or pet relationship with an owner at the time of the animal's death.

우는, 개별구분화장 또는 공동화장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사항대로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⁰⁾ 우리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 사체를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도록 맡긴 반려인(소유주)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특별히 취급하고 개별적으로 화장하여 다른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과 섞이지 않은 것을 예상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여러 마리의 동물 사체를 섞어서 화장 한 후 소유주에게 돌려준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²⁴¹⁾ 동물화장의 시설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체계에서 나아가 동물화장을 개별화장과 공동화장으로 분류하고, 이 각각에 대하여 명시하여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감독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반려동물사체의 매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에서 반려동물사체의 ‘매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반려동물사체처리방법으로서의 매장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

240) 예컨대, 화장과정에서 별도의 효과적인 공간구별이나 분리 없이 동시에 화장하는 ‘공동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반려동물의 화장 후 유골이 섞일 수 있는데,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반려동물 화장법」에서, 이러한 공동화장을 하면서도 ‘개별화장’ 또는 ‘분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본질을 오해하게 하면, 이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준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의 일리노이 주 관련 법령 부분 참고.

241) “동물 장묘업체 여러 마리 한 번에 화장...유골도 엉터리” <http://www.insight.co.kr/view.php?ArtNo=13583-검색일> 2015.8.27.(수)

한 규율태도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반려동물 사육자들의 경우는 자기소유 토지 또는 인근 야산에 임의매립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임의 매립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의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는, 사람의 시신과 관련해서도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사체의 매장관련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i)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자기소유 토지에 매립하는 경우일 것²⁴²⁾, ii) 하천 또는 호수가 있는 경우 해당 하천 또는 호수로부터 묘지까지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일 것, iii) 주택, 공원, 학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묘지까지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반려동물사체의 매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한편,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연장’(自然葬)의 허용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관성제고 측면에서

242)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매립을 금지하고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거니와 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自然葬)을 명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에서 동물장묘업자가 처리하는 동물사체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로 인하여 반려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를 검토해보면,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의5, 별표1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토 계획법령에 따른 지역 구분에서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구분되므로 이를 고려한 용도분류가 필요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에 따른 시설들을 국토계획법령상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지역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다,라제외) 생산녹지지역(*) (다,라)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가,마에서 아목) 생산관리지역(마에서 아) 자연환경보전지역(*) (마에서 아)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가목부터 라목) 일반상업지역(*) (마,사,아)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바,마,아) 준공업지역(*)
26. 묘지 관련 시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8. 장례식장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건축할 수 없는 시설		

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별표25]

현행 건축법령 및 국토계획법령상 규정이 없는 동물장묘시설에 관하여 이를 신설하여 규정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포괄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동물장례식장, 동물 화장 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봉안당, 동물묘지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 각각의 용도를 나누어서 규정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의5, 별표1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자. 동물장례식장

차. 동물건조장시설

카. 동물화장시설

타. 동물봉안당

파. 동물묘지

이렇게 각각의 목을 규정하고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가능 혹은 불가 지역을 규정할 때에 세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상황에 따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장례식장 등의 입지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자목부터 과목까지 규정을 할 경우, 해당 시설의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가능 여부를 사람의 시선과 관련한 시설과 연관지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목부터 과목까지 규정된 시설전체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동물장례식장 및 동물건조장 시설은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는 해당시설들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지역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u>일반공업지역(*)</u> (가에서 차) <u>보전녹지지역(*)</u> · <u>생산녹지지역</u> (다,라,제외) <u>생산녹지지역(*)</u> (다,라,자에서 파) 자연녹지지역 <u>보전관리지역(*)</u> (가,마에서 파) 생산관리지역(마에서 아) <u>생산관리지역(*)</u> (자에서 파) <u>자연환경보전지역(*)</u> (마에서 파)	준주거지역(자에서 파) 준주거지역(*) <u>(가에서 아)</u>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가부터 라, 자부터 파) 일반상업지역(*) (마,사,아)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u>(바,마,아)</u> 준공업지역(*) <u>(가부터 아)</u> 준공업지역(자부터 파)

구체적인 용도분류와 관련해서는 동물장묘시설을 법상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개념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 감독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확정이 된 이후에 각각에 합당하게 용도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정한 용도분류를 통해 해당시설이 부당하게 높은 규제로 시설설치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허술한 규제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절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동물장묘업 내지는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한 우리법의 규율 현황은,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전혀 규율이 없지는 않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규율 목적, 규율형식, 영업에 대한 규제 혹은 기준, 시설 기준, 재정문제 등의 규정이 흠결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법령에서 ‘동물장묘업’이라는 영업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고, 간소하게라도 시설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반려동물을 포괄하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특정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고 해당 법령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목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의 개념 정의, 신고, 허가, 등록 등의 영업의 감독 형식 내지는 기준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중앙 정부의 감독 하에 동물장묘업 내지는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사항이 일괄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동물보호법」상 동물관련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장묘업을 영업의 일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사체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구성하고 동물장묘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반려동물사체처리 관련 사항

의 개괄적 사안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 절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적 논의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²⁴⁴⁾ 2010년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²⁴⁵⁾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사설 반려동물 장묘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사설 업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반려동물 사육인이 사설 장묘업체를 통하여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육인들의 경우 사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동시에 반려동물 사체를 차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도 못하면서,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 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는, 반려동물 사체처리를 공공에서 담당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전체 공공의 비용부담으로

244) “화성시 공동장사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데일리벳』, 2014. 8. 20자. - 검색일 2015. 7. 16(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30098>

245) 의안번호 100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3면.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에서 기금 등으로 반려동물 묘지, 묘원 등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려동물 사육인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사육동물 두수당 분담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반려동물 관련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비사육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반려동물 사육인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분에 대한 진지한 합의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등록된 동물의 사체를 공설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규범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반려동물 사육인구에 비하여 등록 비율이 높지 못하고, 아직 등록제 의무시행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동물에 대해서는 일정비용을 징수하되, 그 비용을 반려동물 복지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그 시설 이용에 이점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하여, 현재는 등록 대상이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에 한정되어 있는데,²⁴⁶⁾ 의무 등록 대상 외에, 임의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 이외의 다른 반려동물을 등록대상으로 포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에서 공설 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근거와 관련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례를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현재 지방

246)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성시의 경우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공설 장사시설의 시설 중 일부로 설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²⁴⁷⁾ 이 경우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특례규정으로 동물장묘시설 관련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별도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점으로 하여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영업과 기준, 시설 설치시 주민 동의 내지는 설명회 개최, 재정 부담 및 사용의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47) “화성시 공동장사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데일리벳』, 2014. 8. 20자. - 검색일 2015. 7. 16(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30098>

제 5 장 결 론

동물장묘업이라는 영업의 형태는 현대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영역이다. 동물장묘업은 단순히 ‘영업’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과 ‘반려’의 관계를 가진 동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정서적 유대관계를 상업화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특수한 형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수요와 소비’의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반려동물 사육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물보호’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사체처리’라는 특수한 문제가 결합된 만큼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의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일 수 없으며, 생명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분쟁조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한편, 반려동물 사육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라는 생명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동물 애호가와 혐오가 사이의 긴장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육자들의 무책임한 유기 등을 방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빈곤함 속에서 여전히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특정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사치스럽고 과도하게 장례를 치루는 모습 역시 일반인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의 존재로 함께 살아온 동물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정서적으로도 건전하고 건강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되어 경제력 있는 반려동물 사육인들의 죽은 반려동물이, 일반적인 경우의 빈곤한 사람들보다 더 대우

받고 예우받는 모습은 인간존중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반려동물 장묘업은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반려의 존재로 함께해 온 동물에 대한 건전한 예우와 상실에 대한 치유의 역할을 하는 영역인 동시에,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업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물장묘업은 영업수요자의 관점에서 등록 기준 등을 완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동물장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장묘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각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고려없이,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엄격한 환경적 기준 등을 갖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영업 형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영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어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환경보호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동물장묘업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애완견의 출생·사망 철저히 관리 - 사회적 분위기·제도 등 잘 마련돼 있어”,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원, 2003. 3.
- “동물보호법 전부(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2011. 4.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4. 7.
- 박수현, “미국의 동물장묘법 개관”, 『동물장묘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워크숍 자료집, 2015. 6. 11.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2-0655,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의안번호 100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 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진단』 제188호, 경기연구원, 2015. 6. 10.
- 이혜은, “일본의 동물 장묘관련 법률”, 『동물장묘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11.

참고사이트

- “가족이라더니...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광남일보』, 2015. 8. 17(월) 자. - 검색일: 2015. 8. 18(화).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9809163216986023>.

참고문헌

- “금산 추모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안돼”, 「금강일보」, 2015. 4. 20.자, - 검색일 2015. 8. 6. 목.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99>.
- “동물 장묘업체 여러 마리 한 번에 화장...유골도 엉터리” <http://www.insight.co.kr/view.php?ArtNo=13583>-검색일 2015. 8. 27. 수.
-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 개선돼야 - 살아서는 가족, 죽어서는 폐기물로 취급”, 「한국상장례 NEWS」, 2014. 9. 2자. - 검색일 2015. 4. 20. 월.
- “KOTRA, 中반려동물 장례업 시장동향 발표 - 반려동물 전용묘지 인기...중국 반려동물 장례산업 주목해야”, 「한국상장례 NEWS」, 2014. 8. 19자. <http://www.dailyvet.co.kr/news/industry/30011> - 검색일 2015. 4. 20. 월.
- “고양이는 왜 반려동물 등록이 안되나요”, 동아닷컴 2014. 11. 18자 - 검색일: 2015. 4. 30.<http://news.donga.com/3/all/20141118/67969115/1>.
- “납골당 유행 편승...반려동물 불법 화장터 ‘우후죽순’”, MBC 뉴스투데이, 2014. 10. 14. - 검색일 2015. 8. 6. 목.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36237_13495.html.
- “동물장묘업 성행...불법이 판친다 - 사체 처리 폐기물 아닌 동물복지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현실적 규정 절실해”, 「개원」, 2014. 10. 23자. - 검색일 2015. 4. 21. 화.
- “美서 애완동물 묘지 첫 국립사적 지정, 「연합뉴스」 2012. 9. 30.자. - 검색일 2015. 4. 20. 월.
-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불법 화장’까지 등장”, SBS 뉴스 2013. 7. 11자. - 검색일 2015. 4. 21. 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79148&plink=OLDURL.

“세종시 부강면 ‘동물장묘업’ 시설 논란”, 『충청투데이』 2015. 1. 5
자. - 검색일 2015. 4. 21. 화.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76837&sc_code=1412156239&page=21&total=5996.

“애완견, 죽으면 쓰레기...반려동물 사체 생활쓰레기 분류”, 『매일신문』, 2010. 1. 13.자. 검색일: 2015. 7. 16. (목).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52&yy=2010.

“애완동물 장례업·문학치료사...미래에 뜰 유망 직업알려드려요”,
chosun.com 2014. 1. 7.자 / 러시아 애완동물장례센터 유망사
업으로 떠올라 - <http://platum.kr/archives/4399> - 검색일 2015.
4. 20. 월.

“협오시설 NO”...용인 ‘반려동물 복지장묘시설’ 건립 난항, 『뉴시스
경기남부』, 2015. 3. 20.자. - 검색일 2015. 8. 6. 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0_0013549390&cID=10803&pID=10800.

“화성시 공동장사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데일리벳』,
2014. 8. 20.자. - 검색일 2015. 7. 16(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30098>.

「春日部市ペット霊園の設置の許可等に関する条例」 http://www.kasukabeshigikai.jp/voices/GikaiDoc/attach/Gk/Gk796_88.pdf. 검색일 2015.
8. 6. (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79148. 검색일 2015.
8. 6. (목).

http://www.animal.go.kr/portal_rml/sale/funeral_list.jsp. - 검색일 2015. 7. 16(목).

참 고 문 헌

http://www.city.kasukabe.lg.jp/kankyoku/kurashi-k/bochi/documents/pepporeien_jouren.pdf. 검색일 2015. 7. 16(화).

<http://www.senat.fr/questions/base/1996/qSEQ961017959.html> - 검색일 2015. 6. 9(화).

<https://www.env.go.jp/council/14animal/y143-08/mat01.pdf> 검색일 2015. 7. 24.(금). (『업종추가의 검토 「동물의 사체 화장 장례업자」에 대해서』 環境省, “動物の死体火葬・埋葬業者について” (<http://www.env.go.jp/index.html>).

네이버 두산백과. 검색일 2015. 4. 17. 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요약”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type=6_18_1bdsm&id=32422. - 검색일 2015. 7. 16(화).